

교육실시기관 \ 월별	2월	4월	6월	7월	9월	11월
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(www.drugsafe.or.kr)	27~28 <취소>		11~12			5~6
대한약사회 (www.kpanet.or.kr)		23~24 <연기>		16~17		
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(www.kpta.or.kr)					16~17	

<참고(유의)사항>

- ※ 교육실시기관에 상관없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수료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, 의무이수 기한 내 희망하는 달에 이수하시기 바람
 - 특히, 신규(변경)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신고수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※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실시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